

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범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9
----------	------

발의일 : 2013. 5. .
발의자 : 윤범로, 이호영 의원

1. 제안이유

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여, 지역 내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을 모색하는 등 산업평화의 도시로 정착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협의회 위원수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(안 제3조 제2항)
- 실무협의회 조항을 신설(안 제 9조 신설)
- 분과위원회 근거 조항을 개정함(안 제10조)
-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 조항을 신설함 (안 제12조 신설).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정비

3. 관계법령

-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

4. 입법 예고 결과 : 의견 없음

5. 기타 참고사항(집행부 의견조회)

-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필요하다 판단

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조 및”을 “제3조와”로, “구성 및”을 “구성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주민 및 시”를 “주민 · 시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15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할”로, “있는”을 “있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함께 있어서는”을 “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”으로, “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각”을 “위원, 공무원인 위원 각각의”로, “이상의”를 “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”를 “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으로 한다.

제9조를 제10조로, 제10조를 제11조로, 제11조를 제13조로, 제13조를 제15조로 각각 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 ·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 · 사용자단체 · 시의 실무 책임자나 고용 · 노동 문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종전의 제9조)의 제목 “(분과협의회)”를 “(분과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의제별 ·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협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위원장은 관계 기관·단체·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, 출석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종전의 제10조)제2항 중 “협의회로부터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, “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”을 “기관·단체·전문”으로,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3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행정기관·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”를 “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해”를 “이행하게 하려고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단체의”로, “촉구 및”을 “촉구와”로, “필요한 경우”를 “필요하면”으로 한다.

제15조(종전의 제13조) 중 “위원 및”을 “위원이나”로, “등에 대하여”를 “등에게”로, “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”를 “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, 제12조를 제14조로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)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4조(종전의 제12조) 중 “작성·비치하여야”를 “작성하여 갖춰 놓아야”로 한다.

제16조(종전의 제14조)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충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 <u>구성</u>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3조와</u> ----- ----- <u>구성과</u> ----- -----.
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충주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의 근로자·사용자· <u>주민</u> 및 시(이하 “노사민정”이라 한다)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.	제2조(노사민정의 책무) ----- ----- --- <u>주민</u> · 시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<u>1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③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20명</u>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회의) ① (생 략)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<u>인정하는</u>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.	제6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인정할</u> ----- ----- <u>있을</u> -----.

현 행	개 정 안
<p>③ (생 략)</p> <p>④ 협의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,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공무원인 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.</p> <p>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3항에 따른 의결 시에는 ----- 위원, 공무원인 위원 각각의 --- 이상 -----.</p> <p>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-----.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9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에 올릴 의안을 검토·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·사용자단체·시의 실무 책임자나 고용·노동 문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</u></p>
<p><u>제9조(분과협의회) ① 협의회의 전문적·효율적 논의를 위하여 각 의제별·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<u>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</u></p>	<p><u>제10조(분과위원회)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 협의회에 의제별·업종별 분과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</u></p>
	<u><삭 제></u>

현 행	개 정 안
<p>• 사용자 단체·시 및 관계 행정 기관의 실무 책임자와 고용·노동 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</p>	<p><삭 제></p>
<p><u>제10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</u>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·단체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출석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	<p><u>제11조(관계 기관 등의 협조) ①</u> 협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위원장은 관계 기관·단체·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, 출석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----- ----- 기관·단체·전문----- ----- 없으면-----.</p>
<p><u>제11조(성실 이행 의무) ①</u> 관계 행정기관·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</p>	<p><u>제12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 지원)</u>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3조(성실 이행 의무) ①</u> ----- ----- 행정기관·노동단체·사용자 단체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	----- -----.
② 위원장은 의결 사항을 <u>이행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 ·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대해</u>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이행 <u>촉구 및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</u>	② ----- <u>이행하게 하려고 관계 행정기관</u> · 노동단체 · 사용자단체의 ----- --- <u>촉구와</u> ----- ----- <u>필요하면</u> ----- -----.
<u>제12조(회의록)</u>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·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	<u>제14조(회의록)</u> ----- <u>작성하여 갖춰 놓아야</u> ----- -----.
<u>제13조(수당 등)</u> 협의회와 실무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	<u>제15조(수당 등)</u> ----- ---- <u>위원이나</u> ----- ----- <u>등에게</u> ----- ----- <u>「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</u> ----- -----.
<u>제14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16조(시행규칙)</u> -- <u>조례의 시행에</u> ----- -----.

관계법령

□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2. 4.16] [대통령령 제23729호, 2012.4.16, 일부개정]

제2조(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, 구성 및 기능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,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(이하 "지역 노사민정"이라 한다)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. 다만,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.

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1.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

2.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

3.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·고용·경제·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

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군·구 고용심의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미 심의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

관한 사항

2.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

3.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·운영, 하부 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·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조(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